

(報 告)

성 남 시 의 회 위 원 회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의안 번호	9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10월 24일

발 의 자 : 박문석 의원의 8인

1. 제안이유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(2000. 10. 18)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"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,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"를 "성남시디자인 지원사업소"로함(안 제3조 제2항 제2호)

3. 관련조례

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 제2항 제2호중 "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,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"를
"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"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①(생략)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
1 (생 략)	1 (현행과 같음)
2. 행정경제위원회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행정국, 경제통상국,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 센터, 사업소중 <u>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</u> , <u>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</u> 소관에 속한 사항	2 ----- ----- -----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 -----
3. (생 략)	3 (현행과 같음)
4.(생 략)	4 (현행과 같음)